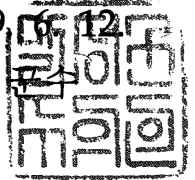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00
----------	------

제출일자 : 2019. 6. 12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가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우리 군 복무조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 안 제8조, 제18조,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2조 삭제
- 안 제12조제2항 근거법령 수정

나. 모성보호시간 확대 (안 제23조제13항)

다. 육아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제23조제4항, 별표3)

라. 방송통신대학교 수업휴가 조항 개정(안 제23조제5항)

마. 불임치료시술 휴가 명칭 개선(안 제23조제12항)

바. 자녀돌봄휴가의 사용 범위 확대(안 제23조 제17항)

사.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 신설(안 제23조제19항)

아.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수정(별표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5. 31. ~ 6. 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제5항 전단 중 “제18조”를 각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한다.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후단 중 “제20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 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5항 중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2항 본문 중 “불임”을 “난임”으로 한다.

제23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17항 중 “상담에 참여할 경우”를 “상담에 참여하거나, 병원진료 또는 예방접종을 할 경우”로 한다.

제23조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그 사용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3 및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u>10</u>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략)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u>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u>을 따른다. 제18조(연가일수) ① ~ ③ (생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 <u>제18조</u>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③ ~ ④ (생략) ⑤ 공무상 <u>제18조</u>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 (중략)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④ (생략)	<u><삭제></u>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u>국가공무원 복무규칙</u>」을 <u>준용한다.</u> <u><삭제></u>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상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 (중략) ⑥ <u><삭제></u> <u><삭제></u>

현행	개정안
제21조(병가) ① 제20조 ② ~ ③ (생략)	제21조(병가)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① ~ ⑩ (생략)	<삭제>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u>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u> <u>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u> <u>있다.</u>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u>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u> <u>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u> <u>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u> <u>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u> <u>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u> <u>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u> <u>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u> <u>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u> <u>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u> <u>2. 월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u> <u>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u> <u>로 계산함</u> <u>3. 월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u> <u>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u> <u>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u> <u>(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u> <u>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u> <u>용한 것으로 봄)</u>

현행	개정안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u>제18조</u>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 ⑪ (생략)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u>불임</u>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중략) ⑬ (생략) ⑭ ~ ⑯ (생략) 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u>상담에 참여할 경우</u>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⑱ (생략)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u>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u>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u>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u>난임</u>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중략) ⑬ <u>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u> ⑭ ~ ⑯ (현행과 같음) 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u>상담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 또는 예방접종을 할 경우</u>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⑱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⑪ <신설>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그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table><tr><th>구분</th><th>대상</th><th>일수</th></tr><tr><td rowspan="2">결혼</td><td>본인</td><td>5</td></tr><tr><td>자녀</td><td>1</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5</td></tr><tr><td>입양</td><td>본인</td><td>20</td></tr><tr><td rowspan="5">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3</td></tr><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3</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tr><td>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tr><td>탈상</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1</td></tr></table>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table><tr><th>구분</th><th>대상</th><th>일수</th></tr><tr><td rowspan="2">결혼</td><td>본인</td><td>5</td></tr><tr><td>자녀</td><td>1</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10</td></tr><tr><td>입양</td><td>본인</td><td>20</td></tr><tr><td rowspan="5">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3</td></tr><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3</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tr><td>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tr><td>탈상</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1</td></tr></table>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별표4]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생략)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4]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현행과 같음)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

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서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

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에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